



제 305 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교통위원회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7. .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0일 이진환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폐지와 함께 공공청사 및 공공공원·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할 제도와 주차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공청사, 공공시설, 공공 부설주차장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나. 공공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 다.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 및 유료 운영시간을 규정함. (안 제25조, 제26조)
- 라.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와 피해보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7조, 제28조)
- 마.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과 주차요금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9조, 안 별표 1의2)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자동차관리과

라. 입법예고 : 2024. 7. 10. ~ 2024. 7. 15. (5일간)

마.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4장 ‘공공 부설주차장’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의2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25조와 제26조에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을 정하는 등 적절한 요금 부과를 통해 주차 수요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1에 공공청사와 공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요금표를 신설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재산관리과에서 운영 중인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는 폐지하였고, 부칙 제4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별 조례에서 운영 중인 주차요금 관련 조문을 함께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그동안 주차 관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주차요금 징수 근거가 없어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관계 조례- 재산관리과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징수 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3조(부설주차장 위탁관리)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2조를 준용하고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주차요금(1면당)			월정기권
	입차~60분	입차 60분 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 요금	
공공청사	무료	200원	5,000원	30,000원

### 「남양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7] <개정 2019. 6. 27., 2023.6.29.>

#### 부대시설 사용료(제9조제2항 관련)

##### ○ 주차시설

[단위 : 원]

구분	주차요금(1면당)			월정기권
	입차~60분	입차 60분 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체육시설	무료	200원	5,000원	30,000원

가.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갖춘 시설에 한하여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따른다.

나. 다만, 개별 체육시설에서 해당 체육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의 강행규정으로 인한 주차장 유료운영 시 발생하는 필수비용
  - 요금징수를 위한 개소당 차단기 및 CCTV (개소당 차단기 1억, CCTV 0.5억)
    - ※ 무료 주차장의 의무적 유료화로 인한 필수적인 초기 시설비용
  - 주차장 운영 유지비(인건비 + 시설유지비) 1개소당 0.35억원
    - ※ 23년 기준 공영주차장 1개소 평균 유지비 적용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대상: 27개소 무료주차장)

- 시설비\* = 27 × 1.5억원(1개소당) = 40.5억원
  - \* 토목, 전기, 통신 등 기타비용 제외
- 유지비\* = 27 × 0.35억원(1개소당) = 9.45억원
  - \* 시설설치 이후 추가적 유지관리비 포함

나. 추계결과

구 분	25년	26년	27년
시설비	13.5억원	13.5억원	13.5억원
유지비	9.45억원	9.45억원	9.45억원
비용 소계	22.95억원	22.95억원	22.95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없음

#### 4. 작성자 : 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계
세 출		2,295,000	2,295,000	2,295,000	945,000	945,000	8,775,000
시 설 비		1,350,000	1,350,000	1,350,000	0	0	4,050,000
운 영 비		945,000	945,000	945,000	945,000	945,000	4,725,000
재원 조달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계
자체 수입	소 계	2,295,000	2,295,000	2,295,000	945,000	945,000	8,775,000
	지방세	2,295,000	2,295,000	2,295,000	945,000	945,000	8,775,000